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공고 제2026-17호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
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2026. 8. 28.

팔탄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목 차

I . 사업개요	3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 개요 등	
II .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4
1. 계약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III . 제안 요청사항	7
1. 일반 요청사항	
2. 과업 세부내용	
3. 제안서 작성지침	
4.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5. 유의사항	
IV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4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계약체결	
V . 입찰유의서 등	22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5. 청렴계약이행각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VI . 관련 서식	47

I.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기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내에 진열대 일부를 철거하고 쇼케이트 설치 및 외부에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하여 신설한 농산물의 보관 · 진열 판매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활성화로 출하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입찰은 여러 제안업체들의 향상된 기술능력에 대해 제안 설명을 통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투명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저온저장고 및 쇼케이스 설치로 기계의 효율성 및 내구성 확보에 그 의미가 있다.

2. 사업개요

- 사업명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마곡길 9 (현 하나로마트 매장내)
- 사업량 : 세부 사업내용은 Ⅲ. 제안 요청사항- 과업 세부 내용 참조
 - 저온저장고 2.5평 2동(전기배선공사 포함)
 - 쇼케이스(일배 세미다단) 4대(안티범퍼 및 앤드판넬, 전기배선공사 포함)
 - 잔류농약 검출기 2대 등
- 완료조건 : 지정장소에 하차하여야 하고, 장비설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운전 및 사용방법, 유지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4. 사업기간

-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납품 및 설치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에서는 수요처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기한에 맞추어 물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를 열람 완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업체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가.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입찰공고시 게시(첨부)한 자료로 갈음함.
- 과업내용에 대한 지침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팔탄농협 총무과(전화 : 031-353-8803, 031-8024-0715)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한 : 2026년 9월 18일(금요일) 17:00까지
- 접수장소 : 팔탄농협 본점 2층 총무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3 (전화 031-8024-0715)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준비물 및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2 참조)

③ 입찰보증금(보증서)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사업자번호:124-82-16842)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당해 제조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⑧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⑨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⑩ 심사제안서 2부

⑪ 사업제안서 15부, CD 또는 USB 1매

- 제안업체명 표기 2부 (사업제안서 내부 검토용)
- 제안업체 미표기 15부 (제안서평가위원 배부용)
- CD 또는 USB 1매는 PPT 발표용으로 제출 의무대상은 아님

⑫ 밀봉된 가격입찰제안서 1부

다. 제안설명회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요일) 09:00
- 장소 : 팔탄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구장길 1-3)
(※ 상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준비물 : 입찰참가자 신분증 및 사용인감
- 제안서 설명순서 및 방법
 -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2인 이하의 소속 임직원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된 임직원만 가능하며, 대리인외의 자가 참가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만 허용)에 한하여 입장가능
 - 진행방법 : 제안서 설명발표 15분 이내 (질의답변 시간 포함)
(필요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설명 가능)
 - 발표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청사항

가. 장비 및 재료

-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 2) 한국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미 인증 제품은 발주처의 확인 및 동의 후 사용한다.
- 3)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필요하여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다.

나. 동력사용

본 시공에 사용되는 전력, 연료 및 용수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관리

- 1) 현장 내에 반입된 자재, 기기, 공구류는 도급자 측에서 관리해야 하며, 현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 2) 안전, 환경, 위생, 화재예방, 정리정돈, 공해방지 등 현장 관리상 필요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나 현장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수급자는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과업 세부 내용

가. 과업 범위

- 옥외 저온저장고 2.5평 2동(전기배선공사 포함)
- 쇼케이스(일배 세미다단) 4대(안티범퍼 및 앤드판넬, 전기배선공사 포함)
- 잔류농약 검출기 2대 등

나. 세부 사양

- 1) 잔류농약 검출기 : 2대

2) 옥외 저온저장고

구분	세부내역
우레탄 판넬 설치 (2.5평 2동, 지붕 비가람막 설치)	○ 준불연 우레탄 판넬 : 100T ○ 비가람막 우레탄 판넬 : 50T ○ 비가람막 트러스 : 각관 50mm×50mm ○ 저장고 깔판 : PVC ○ LED 고내등 : 20W 이상 4개 ○ 기타 : 기압조정변, 오버랩 도어(900W×1800H), 에어커튼 2대 등
냉동기 설치	○ 인버터 냉동기(냉장) : LG인버터 4.0HP 2대 ○ 유닛 쿨러 : 13.1m³용 2대 ○ 컨트롤 판넬 : 로컬판넬(이중함) 2대
냉매배관 및 전기배선	○ 동관 : KS “L”타입 2식 ○ 동관보온 : 40T/30T ○ 냉매 : R-410 ○ 전기배선 : 동력선 및 제어선 일체
선반류 설치	○ 조립식 플라스틱 선반 : 1050L×610W×1800H 8대 ○ 조립식 플라스틱 선반 : 1350L×610W×1800H 2대 ○ 조립식 플라스틱 선반 : 1500L×610W×1800H 2대
자동제어 설치	○ 저장고 콘트롤러 KIT 2대 ○ 냉동기 알람 모니터링 KIT 1대 등

3) 쇼케이스

구분	세부내역
쇼케이스 설치	○ 일배 세미다단 : 1875L×870W×1500H 2식 ○ 일배 세미다단 : 2500L×870W×1500H 2식 ○ 안티범퍼 : 6자 2개, 8자 2개 ○ 앤드판넬 : 4매
냉동기 설치	○ 인버터 냉동기(냉장) : LG인버터 7.5HP 1대
냉매배관 및 전기배선	○ 동관 : KS “L”타입 4세트 ○ 동관보온 : 40T/30T ○ 냉매 : R-410 ○ 전기배선 : 동력선 및 제어선 일체
자동제어 설치	○ 쇼케이스 콘트롤러 KIT 4대 ○ 냉동기 알람 모니터링 KIT 1대 등

다. 사후관리 방안

1) 사후관리 방안

- 공급되는 설비는 자재, 제작, 성능 상의 결함이 없이 제작, 납품, 설치하며, 설치 및 시운전 36개월간에 정상 운전되는 것을 보증한다.
- 설치 시운전 후 36개월 기간 내에 설계 및 자체 결함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설비를 보수, 개조 또는 대체하여 하자 내용을 제거한다. (3년간의 보증보험증권 예치)

2) 설치 및 완공 후 운영/기술 운영 방안

- 설치 및 완공 후 작업자들에게 메뉴얼 책자와 기계 및 전기 도면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운전, 기술 교육을 시켜 추후 기계 작동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가격입찰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 <표지><서식3>
- <작성목차 및 내용>.....<서식3-1>
-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3-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서식3-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서식3-3-1>

- 수행경험(실적)집계표<서식3-4>
 - 유사용역 및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납품완료 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3-4-1>
 - 회사의 경영상태 등.....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서식4>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 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 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설비계획
 - 설비기기의 사양 및 제품 특징
 -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계획
 - 가공품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 계획
 - 설비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적정성
 - 제품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 납품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계획
- 물품 제작 또는 납품, 설치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
- 설치(납품)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서식5>

- 입찰가격명세표 작성 시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서식5-1>

4.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7부.
 - 제안업체 표기 2부 및 제안업체 미표기 15부
 - 기타 PPT 발표용 USB 1매
 - 25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제안서 발표시간은 15분 이내(질의답변 5분 포함)임으로 페이지 준수
 -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가격입찰서(밀봉제출) 1부.

5.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사업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심사제안서, 가격입찰서로 구분하여 각 제안도서는 종류별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 제안자는 정성적 평가 사업제안서에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제안서 작성, 제출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적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9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행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은 팔탄농협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를 하여 변경 한다.

-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한다.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팔탄농협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작성비 보상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IV.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 조합(법인)의 내부기준에 따름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제안(입찰)가격평가 20%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수행능력평가 (심사제안서)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등	○ 계약담당자가 평가
	사업계획평가 (사업제안서) (60점)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심사(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수행능력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지표 (심사제안서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금액)	10	
	기술지식능력 (40)		○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계획 적정성	5	주관적 평가 (사업제안서 심사위원 평가)
			○ 설비기기의 사양 및 제품 우수성	10	
			○ 가공품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10	
			○ 설비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적정성	5	
			○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 운영(교육 , 훈련)지원계획 적정성	10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100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80점)

가) 수행능력 평가(20점)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기술인력 보유 현황(당해사업 참여기술자에 한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	특급기술자	1인	1.0점
			고급기술자	1인	0.8점
			중급기술자	1인	0.6점
			초급기술자	1인	0.4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으로 한정

* 기술인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24.07.02.시행) 적용

구분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특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협회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수행경험(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기계 납품 및 제조설치 실적 누계금액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10점	10억 이상	10점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5억 이상 10억 미만	8점	
		4억 이상 5억 미만	6점	
		3억 이상 4억 미만	4점	
		2억 이상 3억 미만	2점	
		1억 이상 2억 미만	1점	

- 주)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II-2(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4. 입찰참가자(판매사)와 제작사가 다를 경우 제작사의 납품실적도 인정함.

《 신용평가등급 설명 》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 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경영상태 등(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수행능력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 심사제안서(표지)	<서식 3>
	2	○ 작성목차 및 내용	<서식 3-1>
	3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특허증 사본	<서식 3-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계, 전기, 전자, 제어계측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서식 3-3> 협회 경력수첩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납품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3-4> 발주처 또는 수요기관
경영상태 등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나) 사업계획 평가(6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하되
- 평가점수 산출은 각평가 항목별로 하여 심사위원의 부분별 점수합계 평균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적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기술지식 능력 (40)	○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계획 적정성	5	5	4	3	2	1
	○ 설비기기의 사양 및 제품 우수성	10	10	8	6	4	2
	○ 가공품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설비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10	10	8	6	4	2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 운영(교육 , 훈련)지원계획 적정성	10	10	8	6	4	2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10	8	6	4	2

2)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수행능력평가) + 제안(입찰)가격평가

3. 계약체결

가. 저작권 및 사용권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팔탄농협에 귀속된다.
- 팔탄농협은 협상대상자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다.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라. 협상내용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본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3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바. 유의사항

- 제안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에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농협의 청렴이행 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V.입찰유의서 등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참조)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V. 입찰유의서 등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사무소가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예정가격을 공개하였음에도 낙찰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입찰한 자 및 기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www.redwhistle.org(레드휘슬>헬프라인시스템>NH농협금융 검색)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을 제 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별표의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간 종료 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 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 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본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인격권, 퍼블릭시티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담당자를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증액 ·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 ·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또는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물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별표1】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제3항

【별표2】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

【별표3】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제3항】

제52조(입찰보증금)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품목 조합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정기예금증서. 다만, 정기예금 증서는 질권설정을 하여야 한다. (2015.12.22.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013.4.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015.12.22. 개정)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2015.12.22. 개정)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13.4.1 신설)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2015.12.22. 신설)
5. <삭제>(2013.4.1 개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

제53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지주회사 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2023.10.09. 개정)

가. 입찰보증금

-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선금을 포함한다)

-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지주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제68조(계약보증금)

- ① 규정 제12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제70조의 내용에 따른다.(2015.12.22. 개정)
-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후 환급한다.
- ④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3.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 곤란한 경우
 -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52조제3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2조제5항의 규정은 제4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1.06.30. 개정)
- ⑦ <삭제>(2013.4.1 개정)
- ⑧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규정 제12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담당자는 지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제4항, 제5항】

- ④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2015.12.22. 개정)(2021.06.30. 개정)
 -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2015.12.22. 개정)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15.12.22. 개정)
 - 4. 농협계통사무소(지역·품목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와 계약을 할 때(2015.12.22. 개정)
-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21.06.30. 개정)

[계약규정 제8조] (입찰보증금)

-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주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준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주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을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팔탄농협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팔탄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팔탄농협에서 발주하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팔탄농협에서 발주하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8. 28.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팔탄농협에서 발주하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게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8. .

서약자 : (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귀중

귀 법인과 의 계약(구매·용역·공사 등) 거래와 관련하여 귀 법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법인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 농협중앙회 계약사무모니터링^{주1)}을 위한 DM발송 및 설문조사 ■ 농협중앙회 청렴도 평가^{주2)}를 위한 설문조사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 <u>성명, 핸드폰번호, 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u>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 및 청렴도 평가 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동의안함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합
니다.

2026년 8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회사명 :

- 주) 1.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는 농협의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2. 청렴도 평가 업무는 농협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VI. 관련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등록일자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6.9. .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 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공고 제2026-17호		제 안 서 제 출 일 자	2026. 9. (:)
	입찰건명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액	금 원정(W)			
	납부방법	(현금, 입찰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H.P) : * 설명회 추가참가자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법인)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농협(법인)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당해 제조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서약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본인감 날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서 약 서

당사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제안설명회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팔탄농협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팔탄농협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팔탄농협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입찰건명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2026. 9.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m², 무코팅)
2. 2부 제출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서식 3-3-1>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 납품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완료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발주처 또는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상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붙임

-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서식 3-3-1>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해당협회 기술자경력수첩,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 기술인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24.07.02.시행) 적용

구분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특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협회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건 명	사 업 기 간	납품완료 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실적 (1건)						
	소 계					
②기타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호퍼스케일시스템 납품 및 제조 설치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수요기관 확인) 및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등) 사본 첨부



사 업 제 안 서

입찰건명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2026. 9. .

○○○(회사명)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I.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 등을 요약 기술

II.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공사내용, 주요공사실적

III.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기술제안사항

가. 설비시스템 개요(설비기준 및 계획방향 및 성능보증, 차별화 등)

나. 설비계획 (공정계획 및 배치계획, 장비의 제원 및 특성 등)

다. 가공품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 계획

라.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계획

마. 기타 (특별)계획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공사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장비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시운전 및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V. 기타사항

가 격 입 찰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공고 제2026-17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9월 18일
	건 명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금 액	금 원정(W) 부가세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운전 포함)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은 팔탄농협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법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9. . 입 찰 자 : (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 입찰가격 명세표 -

항 목	금 액	비 고
1.		
1.1		
1.2		
1.3		
..		
2.		
2.1		
2.2		
2.3		
..		
3.		
3.1		
3.2		
.		
① 소 계		
.		
.		
.		
.		
② 소 계		
.		
..		
③ 소 계		
④ 계(①+②+③)		
⑤ 부가가치세 (10%)		
⑥ 총 계(④+⑤)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제안 사업제출서			
접 수 번 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공고 제2026-17호	
접 수 일 자		2026년 9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행하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설명서 (정성적 평가) 15부 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인)----- 절 취 선

제 안 서 접 수 증

귀사에서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제안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공고 제2026-17호	접수일자	2026년 9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팔탄농업협동조합 직책	성명	(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 . 9. .

제출자 : (인)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보안서약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귀 농협에서 시행하는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농협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9. .

서 약 자 : 인(사용인감)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열람을 완료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 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드립니다. ※ 팩스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 팩 스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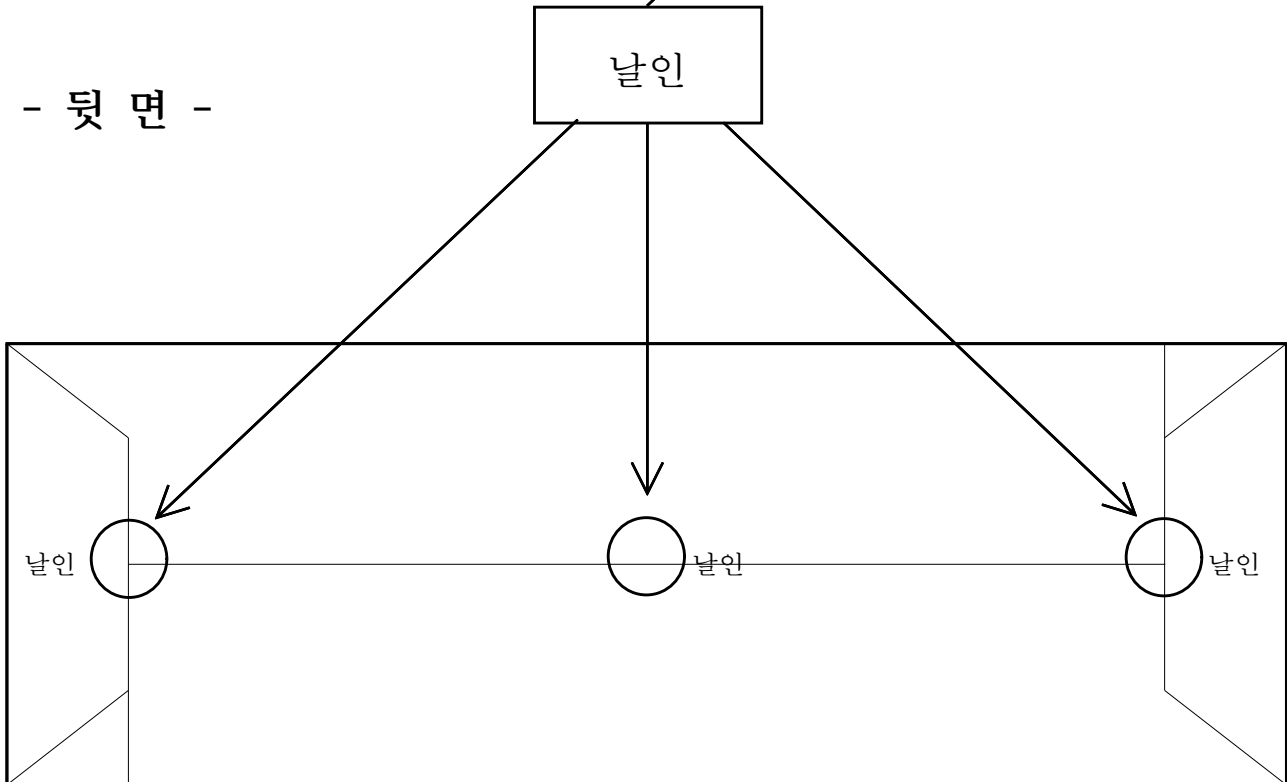
<참고 1>

가격입찰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팔탄농협 하나로마트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및 설비기자재(쇼케이스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납품, 설치
입찰가격 제안서 재증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